

은행은 본인에게 이 약정서상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과 이 약정서의 사본을 교부하여야 합니다.

## 외국환(수출입 등)거래 약정서

20년 월 일

(주) 한국 씨티은행 앞

본 인 \_\_\_\_\_ (인)

주 소 \_\_\_\_\_

본인은 (주) 한국 씨티은행(이하 “은행”이라 합니다.) 과 제1조 각 항에 정한 거래를 함에 있어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이 적용됨을 승인하고 다음 각 조항에 따르기로 합니다.

### 제 1 장 공통사항

#### 제 1 조의 1 정의

이 약정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① “화환어음”이란 선적서류를 첨부하여 발행되는 환어음을 말한다.
- ② “무화환어음”이란 화환어음에 대응되는 것으로서 환어음에 선적서류가 첨부되지 않고 그 대신 증명서 또는 확인서를 붙이는 조건으로 발행되는 환어음을 말한다.
- ③ “내국신용장”이란 수출화물 또는 수출용원자재를 국내에서 구매하기 위한 신용장을 말한다.
- ④ “선적통지부 사후송금방식 수출거래(Open Account Transcation)”란 물품매매계약에 따라서 수출상은 상품선적과 함께 운송서류를 수입상 앞으로 직접 발송하고, 일정기간 경과 후 수출대금을 수출상이 지정한 은행계좌에 수입상이 직접 입금시키는 수출거래를 말한다.
- ⑤ “대도”란 은행이 고객의 ‘수입화물대도신청’에 따라 수입거래 관련 대금 결제 전에 동 행의 수입화물에 대한 소유권을 유지한 채 해당 수입화물을 처분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 ⑥ “일람출급”이란 구비한 서류를 은행에 제시하고 대금을 청구하면 즉시 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 ⑦ “기한부출급”이란 일람출급에 대칭되는 것으로 선적서류 수령후 일정기간(예:30일, 60일, 90일)이 지난 후 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 ⑧ “차기통지서”란 은행의 예치환거래은행이 지급지시 등에 따라 자금을 출금하였다는 통지서를 말한다.
- ⑨ “수입화물선취보증서”란 수입물품은 이미 도착했으나 운송서류가 도착하지 아니하여 운송서류 도착 이전에 선박회사에 선하증권 원본 대신 제출하고 수입화물을 인도받는 보증서를 말한다.
- ⑩ “확인신용장”이란 개설은행 이외의 제3은행이 신용장에 일치하는 제시에 대하여 결제나 매입을 약속하는 신용장을 말한다.
- ⑪ “(대고객)전신환매도율”이란 현찰 외 외화 살 때 환율 또는 외화로 송금 보낼 때 적용되는 환율 등을 말한다.
- ⑫ “(대고객)전신환매입율”이란 현찰 외 외화 팔 때 환율 또는 외화로 송금 받을 때 적용되는 환율 등을 말한다.



## 제 1조의 2 적용범위

이 약정은 다음 각 항의 현재 및 장래의 모든 거래에 적용하기로 합니다.

- ① 수출거래
  - 1. 화환어음(환어음이 첨부되지 않은 선적서류를 포함합니다. 이하 이 약정에서 같습니다.)의 결제, 매입 및 추심
  - 2. 보증신용장 등에 의한 무화환어음 (Clean Bill)의 결제 및 매입
  - 3. 기타 전 각 호에 준하는 거래
- ② 수입거래
  - 1. 신용장 발행
  - 2. 화환어음의 인도 및 결제
  - 3. 보증신용장에 의한 무화환어음의 인도 및 결제
  - 4. 기타 전 각 호에 준하는 거래
- ③ 내국신용장발행거래
- ④ 내국신용장환어음 또는 판매대금추심의뢰서(이하 “내국신용장어음등”이라 합니다)의 매입(추심)거래
- ⑤ 선적통지부 사후송금방식 수출거래(Open Account Transaction)에 의한 수출대금채권 매입거래(이하 “수출대금채권 매입거래”라 합니다.)

## 제 2 조 권리의 행사

- ① 수출화환어음, 내국신용장환어음등의 매입대금(은행의 매입대금을 말합니다. 이하 이 약정에서 같습니다.) 및 수출대금채권 매입대금의 경우에는 은행은 제15조, 제16조, 제29조, 제30조 및 제33조 제2항에 의하여 청구하거나 금전소비대차에 의한 대출금으로 보아 어음채권(어음이 발행된 경우에 한함) 또는 여신채권 중 어느 것에 의하여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② 수입화환어음 및 내국신용장환어음 결제를 위한 대지금금의 경우에는 은행은 어음채권(어음이 발행된 경우에 한함) 또는 여신채권 중 어느 것에 의하여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제 3 조 담 보

- ① 본인은 제1조의 거래에 수반하는 물품 및 관련서류를 당해 거래와 관련하여 은행에 부담하는 채무와 이에 부수하는 이자, 할인료, 수수료, 지연배상금, 부대비용 기타 은행에 대한 지급채무 등의 지급을 위한 담보로서 은행에 양도하기로 합니다.
- ② 수입/수출화물이 멸실, 훼손, 변질, 분실, 감가 되거나 그러한 위험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본인은 은행의 청구에 따라 곧 은행이 인정하는 담보나 추가담보를 제공하고 또는 보증인을 세우거나 이를 추가하기로 합니다.

## 제 4 조 적용환율

적용환율은 신청서 등을 접수한 날과 관계없이 실제로 지급 받거나 지급하는 날의 대고객전신환매입율 또는 매도율로 합니다. 다만, 제15조 제1항 제6호 및 제22조 단서의 경우 은행의 외화지급보증 대지금금 계정 처리일의 대고객전신환매도율로 할 수 있습니다.

## 제 5 조 서류의 진정 및 은행의 면책

- ① 본인은 은행에 제출하는 신용장이 진정, 유효하고, 관련서류가 충분, 정확, 진정, 유효하고 신용장의 조건, 수출/수입계약서 또는 용역계약서 등의 조건과 완전히 일치할 것임을 보장합니다.
- ② 은행은 신용장 및 관련서류에 관한 다음 각 호 사유에 대하여는 아무런 의무나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 1. 신용장 및 선적서류의 형식, 충분성, 정확성, 진정성, 위조, 변조 또는 법적 효력.
  - 2. 선적서류 상에 표시되어 있는 화물의 명세, 수량, 중량, 품질, 상태, 포장, 인도, 가격 또는 실재여부
  - 3. 화물의 매도인, 송하인, 운송인, 운송 주선인, 수하인, 보험자, 기타 관련자의 성실성, 작위 또는 부작위, 지급능력, 이행능력 및 신용상태 등
  - 4. 본인이 전신환 상환(T.T. Reimbursement)을 이용하는 수입신용장의 발행을 신청한 경우 동 조항의 삽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다만, 은행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 ③ 은행은 신용장 및 관련서류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도 그의 매입, 지급, 인수, 연지급확약에 대한 동의 또는 거절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본인은 그 하자에 관한 확인서 또는 보증서 기타 은행이 요청하는 서류를 제출하기로 합니다.
-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처리로 인한 비용과 책임은 은행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한, 본인이 부담하기로 합니다.

**제 6 조 수수료, 비용 및 손해의 부담**

- ① 본인은 은행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한 것이 아닌 한 제1조의 거래에 따른 이자, 할인료, 수수료, 지연배상금, 손해배상금, 기타 부대비용 및 은행의 권리행사, 권리보전, 담보의 취득 및 처분에 따른 비용, 운임, 보험료, 기타 모든 비용 및 손해를 부담하며, 은행이 계산근거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청구하는 바에 따라 곧 지급하기로 합니다. 다만, 본인이 계산방법 등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은행은 이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통보합니다.
- ② 은행은 제1항의 이자, 할인료, 수수료 등 모든 비용의 요율 및 계산방법을 **성질상 고시하기 어려운 것 (지급거절 등에 따른 법적비용, 대체거래에 따른 거래비용 등)**을 제외하고는 고시토록 합니다.
- ③ 제1항의 수수료 등을 본인 이외의 자가 부담하기로 되어있는 경우에 본인의 비용으로 은행이 본인 이외의 부담자에게 청구하였으나 입금되지 아니하여 본인에게 청구한 때는 본인이 이를 곧 지급합니다. 다만, 은행이 본인 외의 부담자로부터 이를 지급 받는 경우에는 반환합니다.

**제 7 조 보험금**

- ① 은행은 수출/수입화물에 대한 보험금을 직접 청구하여 수령할 수 있고, 이 경우 본인은 은행의 청구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곧 제출하기로 합니다.
- ② 은행이 제1항의 보험금을 이 약정에 따른 채무 및 이자 등의 변제에 충당한 후에도 잉여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본인에게 반환하기로 합니다. 다만, 본인이 은행에 부담하고 있는 다른 채무가 있는 경우에는 은행은 이를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13조에 준하여 본인의 은행에 대한 기타 채무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제 8 조 적용기간**

이 약정의 적용기간은 정하지 않기로 합니다. 다만, 은행이나 본인은 통지에 의하여 이 약정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지 전에 이루어진 거래에 대하여는 이 약정을 계속 적용합니다.

**제 9 조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적용**

이 약정은 전자금융거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제1조 각 항의 거래에도 적용하기로 합니다.

**제 10 조 언어**

이 약정은 국문과 영문으로 작성되며 국문본과 영문본이 상치되는 경우에는 국문본이 우선합니다.

**제 11 조 준용규정**

본인과 은행은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및 이 약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따로 정함이 없는 한 「신용장통일규칙」, 「추심에 관한 통일규칙」, 「은행간 화환신용장대금상환에 관한 통일규칙」, 「국제표준은행관행」, 「보증신용장통일규칙」, 기타 국제 규칙, 「전자무역업무표준약관」 및 은행의 관련 규정에 따르기로 합니다.

**제 2 장 수출거래에 대한 특약**

**제 12 조 환거래은행 및 송달방법의 선정**

- ① 환거래은행의 선정과 수출환어음 또는 선적서류의 송달방법은 신용장 또는 수출계약서, 매입신청서 등의 조건에 따릅니다.
- ② 신용장 또는 수출계약서, 매입신청서 등에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환거래은행 및 화환어음의 송달방법은 은행이 선정하기로 합니다. 다만, 이로 인하여 생기는 손해는 은행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한 본인이 부담하기로 합니다.

### 제 13 조 선적서류의 인도

- ① 은행은 신용장에 의한 수출환어음 또는 선적서류를 신용장 개설의뢰인, 수출화물의 매수인 등에게 인도할 때는 신용장조건에 따릅니다. 다만, 신용장에 특별한 지시가 없는 경우 은행은 환거래은행 등의 소재지의 법령이나 관습에 따라 처리할 수 있습니다.
- ② 은행은 무신용장에 의한 수출환어음 또는 선적서류를 지급인, 수출화물의 매수인 등에게 인도할 때는 매입 또는 추심신청서에 기재된 조건에 따르기로 합니다. 다만, 은행의 채권 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타당한 사유가 있거나 환거래은행 등의 소재지의 법령 또는 관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은행은 인도조건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③ 수출환어음의 인수인이 수출환어음의 만기 전에 선적서류의 인도를 청구하는 경우 은행은 수출화물의 송장가격에 비추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수령하고 선적서류를 인도할 수 있습니다.
- ④ 은행이 제1항 단서, 제2항 단서 또는 제3항에 따라 처리하거나 환거래은행 등으로부터 그 사실을 통보 받은 경우 곧 본인에게 통지하며,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하여 발행하는 비용 및 손해는 은행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한 본인이 부담하기로 합니다.

### 제 14 조 결제기간의 연장

- ① 지급의무자가 결제기간의 연장을 요청한 경우 은행은 본인의 동의를 얻어 승낙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은행이 부득이 하다고 인정하는 때는 본인의 동의 없이 승낙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은행은 승낙한 사실을 곧 본인에게 통지합니다.
- ② 제1항과 관련하여 생기는 손해는 은행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한, 본인이 부담하기로 합니다.

### 제 15 조 매입대금상환

- ①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유 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 본인은 은행으로부터 독촉, 통지 등이 없어도 당연히 다음 각 호에서 정한 화환어음 매입대금 또는 미수금의 상환의무를 지고 곧 갚기로 합니다.
  - 1. 본인에 대하여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7조 제1항 (당연 기한 전 채무변제의무) 각 호에서 정한 사유 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에는 모든 화환어음
  - 2. 화환어음의 지급의무자에 대하여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7조 제1항 (당연 기한 전 채무 변제 의무) 각 호에서 정한 사유 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에는 그 자가 지급의무자로 되어있는 모든 화환어음
- ② 다음 각 호에서 정한 화환어음에 대해 은행은 유선통화, 전자우편, 서면 등 사전에 합의한 방법에 의해 청구하고, 이에 따라 본인은 화환어음 매입대금 또는 미수금의 상환의무를 지고 변제하기로 합니다.
  - 1. 일람출급 수출화환어음이 매입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은행의 매입대금이 입금되지 아니한 경우이거나, 기한부출급 수출화환어음이 매입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인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입금만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은행의 매입대금이 입금되지 아니한 경우 그 화환어음
  - 2. 환거래은행 등으로부터 지급 또는 인수 거절된 경우의 그 화환어음
  -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화환어음이 상환되지 아니하여 미수금계정으로 대체처리된 경우 및 은행의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에 의거 회수가 불확실하거나 회수 불능이 확실하여 “회수의문” 또는 “추정손실”로 분류되어 미수금계정으로 대체 처리된 경우의 그 원화금액
- ③ 본인에 대하여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7조 제4항 및 제5항(은행의 서면독촉에 의한 기한 전 채무변제의무) 각 호에서 정한 사유 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 본인은 은행의 서면독촉통지 도달 일로 부터 10일 이상으로 은행이 정한 기간이 지나면 모든 화환어음의 매입대금의 상환의무를 지고 곧 갚기로 합니다.
- ④ 제1항 및 제2항과 관련하여 본인은 환가료 징수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상환일 전날까지 은행이 정한 확정연체이율로 계산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 다만, 부도처리가 환가료 징수기간 내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부도 처리일로부터 손해배상금을 기산합니다.
- ⑤ 제1항 및 제2항과 관련하여 본인은 매입신청 시 제출한 화환어음 또는 매입신청서에 근거하여 매입대금을 상환 하며, 은행은 본인이 매입대금과 이에 부수하는 손해배상금, 수수료, 비용 등을 변제할 때까지 화환어음 및 수출물품에 대하여 모든 권리를 행사합니다.

### 제 16 조 화환어음 등의 반환

- ① 이 약정에 의하여 은행에 대한 채무의 변제 또는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10조 (은행으로부터의



상계 등)에 의한 상계 등의 경우 은행은 본인에게 화환어음 및 수출물품을 채무변제 등의 시점에 반환하지 않아도 됩니다.

- ② 본인은 은행이 반환하는 화환어음을 은행에서 수령하기로 합니다. 다만, 수출물품은 화환어음을 수령함으로써 되돌려 받은 것으로 합니다.
- ③ 은행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화환어음 및 수출물품의 반환이 불가능한 경우 은행의 반환 의무는 없는 것으로 합니다.
- ④ 제 1항 내지 제3항에 의하여 발생하는 비용 및 손해는 은행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한 본인이 부담하기로 합니다.

### 제 3 장 수입거래에 대한 특약

#### 제 17 조 신용장의 발행, 통지 및 환거래은행 등의 선정

- ① 은행은 본인이 제출하는 신용장개설신청서 (조건변경신청서 포함) 등의 기재사항에 따라 신용장을 발행, 통지 및 송부합니다. 다만 신용장개설신청서에 오류, 누락 등이 있거나 기타 은행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얻어 신청서 등의 기재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② 신용장개설신청서에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는 경우 환거래은행 (통지은행, 매입은행, 지급은행, 인수은행, 연지급확약은행, 양도은행, 확인은행, 상환은행, 기타 관련은행을 말합니다. 이하 이 장에서 같습니다.) 및 통지방법은 은행이 선정하기로 하며 수입자가 환거래은행 등을 지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은행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입자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통지한 후 은행은 환거래은행 등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생기는 손해는 은행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한 본인이 부담하기로 합니다.

#### 제 18 조 수입화물 선취보증서에 의한 수입물품 인도

- ① 본인은 화환어음 도착 전에 운송회사로부터 수입물품을 인도 받고자 하는 경우 은행에 수입화물선취보증서 (항공화물운송장에 의한 수입물품 인도 승낙서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발급을 신청하여 은행의 사전승낙을 받아야 합니다.
- ② 본인은 수입화물선취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은행은 본인의 신용도에 따라 수입결제대금의 적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제 19 조 대도물품의 처분

- ① 본인은 대도물품을 입고, 운반, 출고, 가공, 매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또한 기타 은행의 권리를 해하는 행위도 할 수 없습니다.
- ② 본인은 대도물품을 매도할 경우 금액, 물품의 인도, 대금의 영수방법 등에 관하여 미리 은행의 동의를 받기로 합니다.
- ③ 본인은 대도물품의 매도대금 영수 후 곧 은행에 지급하며 매도대금을 어음, 기타 유가증권 등으로 받는 경우에는 이를 곧 은행에 양도하기로 합니다.

#### 제 20 조 신용장 조건과 불 일치하는 화환어음

- ① 은행이 채권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은행은 신용장 조건과 불 일치하는 서류제시에 대하여 본인의 동의 없이 지급, 인수, 또는 연지급확약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은행은 본인에게 사후통지 하기로 합니다.
- ② 화환어음이 은행에 도착하기 전 신용장조건과의 불일치를 사유로 환거래은행 등으로부터 지급, 인수 또는 연지급확약등의 동의 여부에 대한 조회를 받은 경우에도 제1항과 같습니다.
- ③ 은행이 본인에게 신용장조건 불일치에 관한 조회를 하였으나 본인의 회보가 조회장 발송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도착하지 않는 경우 은행은 화환어음의 지급,인수, 또는 연지급확약에 대한 동의 또는 거절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하여 발생하는 비용 및 손해는 은행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한 본인이 부담하기로 합니다.

#### 제 21 조 상환채무의 부담과 수입환어음 등의 결제

본인은, 은행이 신용장조건에 따라 지급채무를 부담하거나 그 이행을 한 경우에는 은행에 대하여 상환채무를 부담하며 본인, 은행 및 환거래은행 등 앞으로 발행되는 수입환어음 또는 선적서류에 대하여 그 대금의 상환채무를 부담하기로 합니다.

## 제 22 조 결제일

본인은 대금의 결제조건이 일람 출급인 경우에는 화환어음(차기통지서가 먼저 도착하는 경우에는 그 차기통지서) 도착 후 화환어음(차기통지서가 먼저 도착하는 경우에는 그 차기통지서) 도착일로부터 5은행영업일 이내에 결제하고, 기한부 출급인 경우에는 만기일에 결제하기로 합니다. 다만, 기일이내에 결제하지 못한 경우에는 은행의 관련규정에 따라 외화지급보증 대 지급금 계정으로 처리하여 결제하며 본인은 그 원화금액을 상환하기로 합니다.

## 제 23 조 신용장의 취소 및 조건변경

- ① 은행은 본인이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신용장을 취소 또는 조건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효력은 신용장의 취소 또는 조건변경의 당사자 (개설은행, 수익자, 확인신용장의 경우는 확인은행)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비로소 발생합니다.
- ② 제1항의 본문에 불구하고 유효기일 경과 등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은행은 신용장의 전액 또는 미 사용잔액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은행은 본인에게 사후 통지합니다.

## 제 24 조 제3자 명의의 신용장발행

본인이 제3자 명의의 신용장발행을 은행에 본인명의로 신청한 경우에는 모든 부분에 있어서 이 약정이 적용됩니다.

# 제 4 장 내국신용장발행에 대한 특약

## 제 25 조 지급금액

본인은 은행의 내국신용장 발행에 따라 은행에 지급할 해당금액은 다음 각 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기로 합니다.

- ① 원화표시 외화부기 내국신용장발행의 경우에는 발행당시의 내국신용장 원화금액에 불구하고 내국신용장 부기외화 금액에 매입(추심)은행이 내국신용장어음등을 매입(추심)하는 날의 매매기준율을 곱하여 청구한 금액
- ② 순수외화표시 내국신용장발행의 경우에는 해당 외화금액
- ③ 순수원화표시 내국신용장발행의 경우에는 해당 원화금액

## 제 26 조 구매물품의 처분

구매물품 처리에 관하여는 제19조를 준용합니다.

## 제 27 조 신용장의 취소 및 조건변경

은행은 본인이 관계당사자 (개설은행, 수익자)의 동의를 얻어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내국신용장을 취소 또는 조건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효기일 경과 등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은행이 신용장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은행은 본인에게 사후 통지합니다.

## 제 28 조 결제일

내국신용장의 결제일에 관하여는 제22조를 준용합니다. 다만, 제22조의 '화환어음'은 '내국신용장어음등'으로 대체합니다.

# 제 5 장 내국신용장어음 매입(추심)에 대한 특약

## 제 29 조 매입대금상환

- ①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유 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 본인은 은행으로부터의 독촉, 통지 등이 없어도 당연히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내국신용장어음등 매입대금의 상환의무를 지고 곧 갚기로 합니다.
  1. 본인에 대하여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7조 제1항 (당연 기한 전 채무변제의무) 각 호에서 정한 사유 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의 모든 내국신용장어음등



2. 내국신용장 발행은행에 의하여 지급 거절되는 경우의 그 내국신용장어음등
- ② 본인에 대하여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7조 제4항 및 제5항(은행의 서면독촉에 의한 기한 전 채무변제의무) 각 호에서 정한 사유 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 본인은 은행의 서면독촉통지도달일로부터 10일 이상으로 은행이 정한 기간이 지나면 모든 내국신용장어음등 매입대금의 상환의무를 지고 곧 갚기로 합니다.
- ③ 제1항 및 제2항과 관련하여 제15조 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합니다.

**제 30 조 내국신용장어음 등의 반환**

내국신용장어음등의 반환에 관하여는 제16조를 준용합니다.

**제 6 장 수출대금채권 매입거래에 대한 특약**

**제 31 조 선적서류의 발송**

수출대금채권 매입거래와 관련한 선적서류(운송서류, 보험서류, 송장 등 신용장 요구서류 및 기타 수출계약서에 의해 요구되는 서류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는 본인의 책임하에 발송하고, 그 증빙서류를 매입신청시 선적서류 사본과 함께 은행에 제출합니다.

**제 32 조 수출대금채권의 양도**

본인은 수출대금채권 매입의뢰시 은행이 정한 양식의 수출대금채권 양도에 따른 대금지시서(Standing Payment Instruction)를 수출대금채권의 지급의무자(이하 “지급의무자”라 합니다.)에게 송부한 후 지급의무자로부터 이에 대한 동의서를 받아 은행에 제출합니다.

**제 33 조 수출대금의 회수 등**

- ① 본인은 지급의무자에게 수출대금을 은행에 직접 지급하거나 또는 은행이 지정한 계좌에 입금하도록 합니다.
- ②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유 중 하나라도 발생하는 경우 본인은 은행으로부터의 독촉, 통지 등이 없어도 당연히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수출대금채권 매입대금의 상환의무를 지고 곧 갚기로 합니다.
1. 수출대금채권 만기일로부터 은행이 정한 기일까지 수출대금이 입금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당해 수출대금채권
  2. 지급의무자가 만기일 이전이라도 수출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한 경우의 당해 수출대금채권

**제 34 조 이자 등**

수출대금이 수출대금채권 만기일에 회수되지 아니하는 경우 본인이 은행이 정한 계산방법, 지급시기 및 방법에 따라 입금지연이자 또는 부도이자를 지급합니다.

**제 35 조 준용규정**

본 장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2장 수출거래에 대한 특약”이 적용됩니다.

본인은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및 이 약정서 사본을 확실히 수령하고, 주요 내용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습니다.	
본 인	(인)